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금융정책 수행 기관간 자료 협조 의무화 >
■ 민홍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68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금융정책 수행 기관간 자료 협조 의무화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민홍철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2024. 12. 24.
3. 회 부 일: 2024.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Ⅲ. 검토의견: 금융정책 수행 기관간 자료 협조 의무화

-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과 기획재정부장관,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은행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u>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65조(자료협조) ① ----- ----- ----- ---. <u><후단 삭제></u> ② 원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u>기획재정부장관</u> 2. <u>예금보험공사</u> 3. <u>한국은행</u>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u><신설></u>	

- 현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¹⁾는 정책수행에 필요한 경우 상호 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1)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에 두는 정책결정기구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함(「금융위원회법」 제65조 및 「한국은행법」 제94조²⁾).

○ 또한, 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조사 의뢰 및 자료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법 제65조의2³⁾),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⁴⁾).

○ 이는 금융 분야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간 자료 협조를 통해 경제 정책, 외환정책, 국내 금융정책과 통화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와 달리 현행법에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 수행 기관(기획재정부장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개정안은 이를 마련하려는 것임.

2) 「한국은행법」

제94조(자료 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현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법 제67조),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협조 의무가 있는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적 관련성이 높은 일부 기관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감독 등 업무 수행의 시의성·편의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이 금융감독원에게는 임의적 자료협조 요청 권한을 부여하고(법 제67조), 협조 의무가 있는 기관간 자료 요청은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고려한 것이라는 점, 개정안과 같이 중앙행정부처의 장(長)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법상 특수법인⁵⁾인 금융감독원의 자료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는 정보공유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개정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개정안이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검사·조

5) 참고로,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사자료, 개인정보 포함 자료 등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의 민감정보
 보가 불필요하게 다른 기관에 과도하게 공유될 우려도 제기하였음.

○ 참고로,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 등⁶⁾은
 기관간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보공유 양해각서(MO
 U)⁷⁾ 등을 체결하는 등 상호간 자료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에 따라 정보를 공유 받고 있으나 제한적이므로, 적시성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해 자료 요청을 위한 규정 마련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
 한다는 의견임⁸⁾.

6) 참고로, 기획재정부차관·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임(「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7)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2012. 9.), 한은·금감원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2023. 11.)가 체결되어 있음.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간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2012. 9.)

1. 기본 원칙

나. 각 기관은 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제출받고 있는 업무보고서 등의 금융 정보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각 기관의 정책수행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

◇ 「한은·금감원간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2023. 11.)

1. 기본 원칙

나. 양 기관은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저축은행, 신탁, 농협, 수협, 산림조합. 이하 같다) 및 그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부터 정기 혹은 수시로 제출받고 있는 금융정보를 최대한 공유함으로써 양 기관의 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및 중앙회(이하 “비은행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중복보고에 따른 업무부담을 최소화한다.

8) 다만,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제21조(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① ~ ③ (생략)

④ 공사는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부보금융회사 및 그 부보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104
